

# 『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,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7조)
-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
- 구미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, 제정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